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50회 임시 이사회 회의록

2024. 12. 24.(화) 10:3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50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2024년 12월 24일(화) 10:30
- 장 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재적이사: 총 11명
- 출석이사: 총 11명
- 출석감사: 총 2명

이사장이 제50회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사무국장이 제50회 임시이사회 성원을 보고하다.

이사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 자료를 통하여 주요 보고사항을 설명하다.

- 보고사항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재단 운영 현황 보고
 3. 장학사업 추진현황 보고

이사장이 서울시 평생교육국 000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올 한해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말하다.

000 이사가 예전에는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로 반납이 많아 장학금 집행률이 다소 낮았는데, 학업장려금 중심 사업을 통해 장학금 집행 이행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다. 이와 더불어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수기공모전, 장학사업 홍보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충 및 이행을 점검도 필요하며, 소규모 조직에서 혁신을 통한 장학사업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하다.

000 감사가 장학사업 예산확보 및 향후 장학재단 발전을 위해 이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사장님이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등 재

단 운영에 힘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다.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285호 임원(비상임 이사) 연임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285호 임원(비상임 이사) 연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제285호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장학재단 비상임 이사 2명(○○○ 이사, 한 ○○○ 이사)의 임기가 2025년 1월 7일 만료 예정으로 이사 임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임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임원(이사) 연임과 관련하여 재단 정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대하여 설명하다. 연임 후 임기는 2025년 1월 8일부터 2028년 1월 7일까지라고 부연 설명하다.

이사장이 ○○○이사의 연임에 대해 동의하는지 이사들에게 묻다.

○○○ 이사가 연임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 이사가 재청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이사장이 ○○○ 이사의 연임에 대해 동의하는지 이사들에게 묻다.

○○○ 이사가 동의한다고 말한다

○○○ 이사가 재청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이사장이 제285호 임원(비상임 이사) 연임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 이사, ○○○ 이사가 연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86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286호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상임 이사장제 도입을 통해 장학사업 활성화 및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정관을 개정한다고 설명하다.

앞서 제50회 임시이사회 개최 안내 시 송부했던 안건 심의 자료에 대해 서울시 공기업

담당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제18조 제목을 (상근이사장)→(상근임원)으로, 내용은 「이사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을 둘 수 있다.」→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근이사 또는 상근이사장 1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비상근임원의 상근임원 전환 연임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부칙의 개정안도 설명한다.

OOO 이사가 이사장 궐위 시 직무대행을 하면서 비상근 이사장 역할의 한계를 느꼈으며, 상근 이사장제가 도입되면 재단의 발전을 더욱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관 개정이 그 첫 번째 단계이며, 정관 개정 이후 후속 조치를 재단과 시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 설명한다.

OOO 이사가 재단 설립된 지 오래되었고 상근이사장제 전환이 늦은 감이 있지만, 조직의 발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임원(이사장)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OOO 이사가 재단이 소규모 조직이지만,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 장학재단의 가치를 높이고, 역할을 충실히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상임이사장제 도입을 강행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OOO이사가 제18조 개정 내용이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본안으로 정관을 개정해도 상근이사장제를 도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다.

OOO 이사가 만약 추후 상근이사 또는 상근이사장제가 도입되어 운영될 경우 보수, 복무 등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묻다.

이사장은 정관이 개정된 이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임원 인사·복무규정 등의 세부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이사장이 정관 개정에 관하여 수정의결 할 것에 대한 추가 의견을 묻다.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심의 안건 제286호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287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287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재단 업무량 대비 부족한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의 정원표를 개정한다고 설명하다. 현재 정원 총 인원 11명에서 2명 증가한 15명으로 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5~6급에서 2명이 증가하여 향후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라 설명하다.

OOO 이사가 원안의 개정 내용을 동의한다고 말하다.

OOO 이사가 재청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이사장이 심의안건 제287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의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이 회의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24년 12월 24일